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현장소장이 근무 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피해자는 OO건설(주)가 시공하는 OO지구 OO아파트 현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OO기술공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1998. 2월부터 위 현장소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여 오다가 1998. 9. 12. 11:00경 출근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등 근무를 하다가 14:00경 몸이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OO병원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22:50경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중간간행사인심장판막증(중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피해자의 경우 원처분청이 판단한 바와 같이 관리직 근로자로서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연장사실 등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기관지 천식이나 심장판막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8개월여 동안 여관(숙소)생활을 해오면서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현

장책임자로서 1백5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관리 감독 업무와 주택공사 및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아래 노출되어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통상보다 무리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쉽게 피로를 느낄만한 특수한 조건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에게 맡겨진 업무의 성격도 당해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본건 재해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하여 기저 질환이 자연경과 과정보다 훨씬 급속히 악화되는 등 업무에 기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중환노무법인한술사무소 (031-778-7582)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평소 안면이 있던 甲이 연대보증인으로 乙을 대동하여 금 7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乙이 丙의 인감증명서를 속여서 가져와 돈을 빌려갔는 바 乙과 丙의 민사상 책임은 어떤지요?

A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며, 위 사안에서 丙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乙은 형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대보증인

이므로 민사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도용 당한 丙의 책임을 살펴보면, 민원 乙이 丙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 근저당 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위조한 백지어음 등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전차용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서 각가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丙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丙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丙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만약 乙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되고 무권대리에 대하여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30조), 위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 등을 도용당한 丙은 추인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674-1652)

한·방·상·식

한방 5과 원장 김원찬



겨울의 추운 날씨를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얼마나 추울까', '감기나 독감을 앓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법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남성들, 팔다름 증이 있는 여성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겨울 한 철은 유난히 길 수 밖에 없다. 겨울의 기후변화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은 몸 속의 평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환경이 추워지면 모세혈관 안의 저항력이 증가하고 점막의 분비는 감

소하며, 몸 안의 항체 함유량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감염된다. 또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조그만 자극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기 쉬워 기상변화와 때이다.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진다. 양기를 불필요하게 요동 시키지 말라.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때는 해가 높고 뜨거워 기다린다. 마음속에 무언가 감춘 듯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이미 귀중한 것을 얻은 것처럼 하며, 추운 기를 없애고 따뜻하게 하라. 다만 너무 덥게 하여 필요 없는 땀을 흘려서 양기를 빼앗기지 않게 한다. 이것이 겨울의 기에 따라 갈무리하는 것을 기르는 도이니 이에 거슬면 실패를 상한다" 한의학에서는 자연계의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윤회하는 겨울을 저장하는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추위가 불려오면 양기를 저장하되 써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기는 따뜻한 온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신의 양기이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갖더라도 될수록 양기를 배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의정부한방병원(820-7200) www.uj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이문환



Q 결혼적령기 남성입니다. 아직 한 번도 성관계를 해 보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친구들은 성경험이 많은데 저도 아무나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고민입니다.

A 성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욕도 왕성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적 경험이 비교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성년이 되어도 성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막연하게 누군가와 관계를 가져보고 싶은 자연스러운 생리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수 있는 당성은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들 중에서 성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정말 마음처럼 조절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그 욕구에 대책 없이 순응할 때 부작용과 함께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요. 그렇기 볼 때 남은 정말 멋진 사람과 성관계를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분으로 책임있는 성을 통해 행복한 성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주세요. 더구나 첫번째 경험이라면 단순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가 진심으로 원할 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경험을 해보는 것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가 원하는 상황에서

이겨주며 관계를 갖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운 경험으로 남을까요?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성매매는 수요자는 일상의 일로 끝나지만, 공급자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신체와 심리적인 피해가 업무의 회포와 함께 연결고리가 되어 끊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통계를 볼 때도 성관계 후에 더욱 친밀해진 경우보다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상대에 대한 신뢰감 상실, 책임회피와 함께 성관계후의 임신위험으로 인한 사후 고민 등이 겹쳐 남/녀 모두 어색해져서 좋은 관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보고가 더 지배적입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든 결정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후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경우를 모두 상상해 보시고 난 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상담센터(542-3171)

의·학·상·식

구취

포천의료원 치과과장 오주은



입 냄새는 성인의 50% 이상이 겪는 흔한 문제로 냄새를 맡게 되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냄새를 풍기는 자신까지 위축시켜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 냄새는 왜 생길까요? 약 80-90%는 입안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강내 혐기성 세균이 아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여 휘발성 황 화합물을 포함한 가스를 유발하여 생깁니다. 따라서 혐기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는 적당

한 환경(온도, 습도, pH, 영양, 산소 등)과 구강내 음식물 축적이 입 냄새 유발조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심한 충치, 잇몸질환,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랑니로 인한 염증, 불량의 보철물 등의 청결하지 못한 구강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생리적인 입 냄새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공복시, 연령이 많을수록, 월경 배란일 전후, 월경기간 등에 입 냄새가 증가됩니다. 그밖에 음식물과 악물도 입 냄새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강 외 원인입니다. 축농증, 비염, 당뇨, 신부전증, 간부전증 등의 다른 부위 질환으로 입 냄새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쉴 때와 코를 막고 숨을 쉴 때의 냄새를 친한 사람에게 맡아보도록 하면 입 냄새의 원인이 입안에 있는지 다른 부위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가구취증입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데도 자신에게 입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자가구취증 환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입을 가리거나 별 뜻 없이 하는 동작도 자신의 구취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결벽성이 강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에 의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포천의료원(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60% 적용 규정의 시행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자 검토 중이라는 뉴스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60%를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자와 양도차익 계산시 실

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간 적용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으로, 1세

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6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도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와같이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자의 범위가 60%의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1세대 3주택자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

느낌이 다르다! 크리닉 헤어

장 헤어 feel

나만의 헤어스타일을 강조하고 싶다!

컷트 · 파마 · 염색
메니큐어 · 드라이

※ 크리닉 헤어 전문상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버스터미널 맞은편) Tel. 031)543-5535 원장 장 경 속